

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

서 윤 기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「의료급여법」에서 ‘대불금’을
‘대지급금’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
반영하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
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
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
한다)의 세입에 「의료급여법」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
대지급금과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추가하고,
‘대불금’을 ‘대지급금’으로 한 「의료급여법」 개정 내용을
반영하고, 제명 띄어쓰기 등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
기준」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이 시민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